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161
----------	------

2022년 4월 1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22년 3월 16일
3. 상정일자 :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2년 4월 1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1. 제안이유

- 2022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 교육부에서 확정통보한 2022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총수와 우리 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증원 (안 제2조): 증 17명 (7,705명 → 7,722명)

○ 본청 · 교육지원청 ·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증 9명 (7,119명 → 7,128명)

○ 교육전문직원

 : 증 8명 (580명 → 588명)

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증원 (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총계: 증 17명 (7,705명 → 7,722명)

- 일반직 정원 증원: 증 9명 (7,116명 → 7,125명)

· 5급 이하 소계: 증 9명 (7,033명 → 7,042명)

- 특정직 정원 증원: 증 8명 (580명 → 588명)

· 5급상당 이하 장학관 ·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 교육연구사

 : 증 8명 (529명 → 537명)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 번호 제3161호로 제출되어 2022년 3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2022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2022년 총액인건비¹⁾ 기준인원 확정에 따라 현행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7,705명에서 7,722명으로 조정(안 제2조)하고,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별표 3])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표-1] 지방공무원 2022년도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일반직		교육전문직원		소계	
	기준인원	인건비	기준인원	인건비	기준인원	인건비
서울	7,143	553,532,499	579	67,958,967	7,722	621,491,466

- 각 시·도교육청의 인건비성 예산은 조직 운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매년 기준인원 대비 인건비 단가를 반영하여 총액을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는바,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금번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에(교육부 학교정책과 -152, 2022.1.15.) 따르면, 2022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규모는 6,214억 9천 1백만원으로, 2022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상의 지방공무원 인건비 5,861억 6천 2백만원보다 353억 2천 9백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통보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일반직 7,125명, 교육전문직 588명, 정무직·별정직 9명 등 총 7,722명으로 책정하였는바, 이는 현행 정원보다 17명이 증가한 규모로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 이는 교육부의 총액인건비의 확정산정 내역을 반영하여 일반직은 기존보다 9명이 증가한 7,125명으로 조정하고, 교육전문직은 기존보다 8명이 증가한 588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범위에 따른 인력 운영이라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지방공무원 정원 변경 내역안

구 분		현 재	증감	변 경(안)
정무직	교육감	1	-	1
일반직	4.5급 이상 소계	62		62
	5급 이하 소계	7,033	9	7,042
	전문경력관 소계	7		7
	연구사 소계	14		14
	일반직 계	7,116	9	7,125
별정직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7		7
	별정직 계	8	-	8
특정직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1		51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529	8	537
	특정직 계	580	8	588
	지방공무원 전체	7,705	17	7,722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705”를 “7,722”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7,119”를 “7,128”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580”을 “588”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7,722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7,125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40		29	11	
4·5급	9		7	2	
5급 이하 소계	7,042				
전문경력관 소계	7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8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7				
특정직 계	588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1		29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537				